

민원 핫라인: 아파트 관리 문제 보고

(Complaint Hotline: Reporting an Apartment Maintenance Problem)

개인 소유 건물의 소유주들은 아파트를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며 난방철(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는 난방을 그리고 일년 365일 온수를 임차자에게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기준은 HPD의 법규집행부에 의해 집행됩니다.

건물 소유주가 아파트를 유지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상태를 311번(뉴욕시 외에서도 (212) NEW YORK을 다이얼함으로써 311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의 뉴욕시 시민 서비스 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자를 위한 TTY 번호는 (212) 504-4115 입니다. 동 센터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합니다.

민원이 긴급 사항인 경우, 유니폼을 착용한 법규 집행 검사관을 보내어 아파트를 검사할 것입니다. 검사관이 민원에 응할 때마다, 임차자에게 다음 정보가 제공됩니다: 발급된 위반에 대한 요약; 민원 번호; 검사 일자 및 검사관의 배치 번호. 검사 후, 임차자는 그들의 권리와 책임 및 가장 일반적인 건강 및 안전 위반을 소개하는 두 가지 브로슈어를 받습니다. 이 브로슈어는 임차자가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건물들이 법규를 지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시와 협력하도록 권장합니다. 건물 소유주에게도 민원에 대해 통보합니다.

위반 상태가 검사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위반 통지를 소유주에게 보내어 상태를 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소유주가 위험한 상태를 즉각 시정하지 않는 경우, HPD의 비상 수리 프로그램이 상태를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자들은 (212)863--5510번으로 전화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내의 긴급 수리 작업의 진행 현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번호는 이미 진행 중인 HPD 주관 긴급 수리 작업의 진행 현황 문의시에만 사용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아파트를 유지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상태를 311번의 뉴욕시 시민 서비스 센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임차자는 주택 법원에서 임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 법원은 임대주에게 위반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불응할 경우 심한 벌금을 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4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차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